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308
------	-----

2007년 9월 4일
교육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8월 17일,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07년 8월 2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: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(2007년 9월 4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관리실장 정동훈)

가. 제안이유

-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“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”을 설립하고,
-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“중앙평생학습관”을 설립하며,
- 「평생교육법」과 「도서관법」의 입법 취지에 맞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설치목적 및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
- 그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,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27번지에 “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”을 새로이 설치하고
-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 평생교육기관을 총괄·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에 “중앙평생학습관”을 새로이 설치하며
-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하여 “중계평생학습관”的 명칭을 “노원평생학습관”으로 변경하고
- 「평생교육법」과 「도서관법」의 입법 취지에 맞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설치목적 및 업무를 조정하며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(2006.12.20 법률 제8069호)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,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청수)

 동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사유

- “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” 및 “중앙평생학습관”이라는 교육기관의 신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.
- “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”的 경우,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소와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부터 계획하였으나 예산관계로 지연되던 중 2007년 학생교육원이 축령산으로 이전함으로 설립계획이 부각되어 5곳의 설립지를 검토하던 중,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에 위치한 중곡초등학교의 건물을 새로이 증축하여 용마중학교를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저출산 및 주민이주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2008학년도에 27실, 2012학년도에는 38실의 유휴교실이 발생하여 이의 활용방안으로서 제안되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설립위치 변경요구로 사직동 학생교육원으로 설립위치를 수정하였음.
- “중앙평생학습관” 설립은 서울지역 평생학습관이 총 17개관(설립 4개관, 지정 13개관)으로 자치구수 대비 68%이고 인구 대비 1관당 봉사대상 인구가 577,000여명으로 전

국 최저 수준이며, 현재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포평생 학습관은 센터로서 조직 및 시설이 매우 취약하므로 서울지역 평생교육지원 체계를 총괄하는 전문적인 독립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.

□ 종합 검토의견

- “유아교육진흥원”은 국가적 관심사항인 저출산 문제 해소와 유아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임.
- “서울시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”이 유아교육 활성화 전담기구로 설립된다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교육연수원, 교육연구정보원 등의 산하기관과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체험학습장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유아들의 안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임.
- 신설되는 “중앙평생학습관”은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의 자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으로 적절하나,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, 서울시민대학, 남산도서관 및 용산도서관 등과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앙평생학습관으로서 프로그램의 명백한 차별화가 요구됨.
- “중앙평생학습관”은 도서관의 기능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센터로서의 각종 정보 제공, 프로그램 개발, 교육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이 모이면 결국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결국은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
- 타 시·도에 비하여 부족한 평생학습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하나 현재의 평생학습관은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그 설립목적은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나, 강좌 프로그램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점 외에 운영상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“중앙평생학습관”的 설립을 계기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 : 조례 개정이 되기 이전에 추경에 기구설치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된 점이 불합리하며 「중계평생학습관」이 「노원평생학습관」으로 개명되면 「고덕평생학습관」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가?
- 답변 : 추경과 조례개정이 함께 제출된 사항은 향후부터는 시정하겠으며 「고덕평생학습관」의 경우 여론조사결과에 따라서 개명하지 않았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「중앙평생학습관」 신설의 경우, 평생학습관이 없는 자치구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센터기능을 담당하는 학습관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함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별표4 중 중앙평생학습관란 삭제

8. 심사결과: 「수정안가결」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